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2017. 5. 18. 조례 제2816호
일부개정 2020. 11. 13. 조례 제3259호(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 2022. 6. 27. 조례 제3424호(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22. 10. 20. 조례 제3434호(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정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와 대학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시책개발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창의력 있는 우수인재 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관협력사업”이란 안양시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안양권 대학”이란 안양시 관내 및 인접 지역에 소재한 제1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관협력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행계획 및 예산확보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관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관협력사업 범위) ① 학·관협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및 대학 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분야 상호교류
2.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 교육 등에 대한 연구 및 홍보
3. 체육, 보건 등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4. 대학생 창업, 취업 등 일자리 네트워크 지원
5. 사이버과학축제, 젊음의 축제, 대학축제 등 참여 및 홍보
6. 인문학 대중화사업 공동참여 및 인적·물적 자원 지원
7. 유기적 교류협력을 위한 공동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8. 그 밖에 시장이 업무 연계 및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학·관협력사업은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를 따라야 한다.

제5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양시 학·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의 추진과제 선정
2. 안양시와 안양권 대학 간의 공동발전 방안
3. 학·관협력 사업의 추진사항
4. 학·관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단 운영
5. 그 밖에 협의회장이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시장과 안양권 대학의 대표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당연직인 시장과 협의회에서 선출한 대학대표 1명이 공동회장이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선출직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공동회장이 협의하여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공동회장 또는 제8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으며,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회의결과는 공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협의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및 실무정리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진과제 발굴 및 검토
2. 협의회의 안건 사전 검토 및 상정
3. 필요시 협의회의 위임을 받아 제5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 각 호의 기능 수행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관련 업무담당국장과 대학 대표가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

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협의회 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회의 시 발언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협조요청)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경비 보조 및 지원)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학·관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학·관협력사업 보조금과 협의회 활동 경비를 포함한다.

제12조(보조금의 신청) ① 학·관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주관 대학의 장은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이 있을 때에는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안양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 6. 27.>

제13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사업시기에 맞추어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지원 사업의 완료 후 주관 대학의 장은 교부금 지원사업의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1. 13., 2022. 10. 20.>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13. 조례 제3259호,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6. 27. 조례 제3424호,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안양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안양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부칙 <2022. 10. 20. 조례 제3434호,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